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❍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고 ‘부의 구성원 중 1인’이 재판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법원조직법」(법률 제17125호, 2021. 2. 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신설한 「법관인사규칙」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 보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함

2. 주요내용

❍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재판장 보임 기준을 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재판장 보임 기준과 구별하여 별도로 신설함(안 제4조의5 신설)

❍ 그 밖에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, 오류를 시정하는 등 규정을 정비함(안 제3조, 제4조제5항, 제4조의2제1항, 제3항 및 제4항, 제4조의4)

3.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재판예규 제　　호　　2021. . . 결재

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

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방법원·가정법원 및 그 지원, 회생법원”은 “지방법원·가정법원 및 그 지원, 행정법원, 회생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지방법원·가정법원 및 그 지원, 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”은 각각 “지방법원·가정법원 및 그 지원, 행정법원, 회생법원의 사건 중”으로 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제3항 제1호”는 “제4항제1호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1항, 제3항 및 제4항 중 “각급 법원장”은 각각 “지방법원장, 가정법원장, 행정법원장, 회생법원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의4의 제목 중 “합의부 재판장”은 “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재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2항 및 제3항 중 “각급 법원장”은 각각 “지방법원장, 가정법원장, 행정법원장, 회생법원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5(고등법원 등의 재판장의 보임) ① 고등법원장 및 특허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의 재판장을 법관인사규칙 제10조제3항의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법조경력, 나이, 고등법원 판사 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.

② 고등법원장 및 특허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재판장

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구성 및 사건처리방식) ① 지방법원·가정법원 및 그 지원,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3인 이상의 판사로 구성한다.	제3조(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구성 및 사건처리 방식) ① 지방법원·가정법원 및 그 지원, 행정법원, 회생법원----------.
② 지방법원·가정법원 및 그 지원, 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사건(이하 "합의사건"이라 한다)은 부장판사 1인을 포함한 합의부 소속 판사 3인이 합의체를 구성하고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여 심판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 3인으로 합의체를 구성하고 그 중 1인의 판사를 재판장으로 하여 합의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.	② 지방법원·가정법원 및 그 지원, 행정법원, 회생법원의 사건 중 ----------. ----------.
③ 지방법원·가정법원 및 그 지원, 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(이하 "단독사건"이라 한다)은 부장판사를 포함한 합의부의 구성원 또는 합의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단독판사	③ 지방법원·가정법원 및 그 지원, 행정법원, 회생법원의 사건 중 ----------

가 심판한다.	---------.
제4조(사무분담의 확정) ① ~ ④ (생 략)	제4조(사무분담의 확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장인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제3항 제1호의 기간 안에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.	⑤ ----------제4항제1호----------. ----------
제4조의2(단독판사의 보임)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배석판사와 단독판사를 법조경력, 배석판사 근무기간, 법관경력(각급 법원에서 처음 근무한 때부터 산정한다), 나이 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.	제4조의2(단독판사의 보임) ① 지방법원장, 가정법원장, 행정법원장, 회생법원장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일정 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한 법관을 단독판사에 우선 보임할 수 있다.	③ 지방법원장, 가정법원장, 행정법원장, 회생법원장 ----------.
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석·단독판사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	④ 지방법원장, 가정법원장, 행정법원장, 회생법원장 ----------.
제4조의4(합의부 재판장의 보임)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합의부	제4조의4(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재판장의 보임) ① 지방법원장, 가정

재판장을 부장판사 재직기간과 종전에 부장판사로서 단독판사의 업무를 담당한 기간, 법조경력,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.	법원장, 행정법원장, 회생법원장 ----------.
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일정 기간 계속해서 단독판사 업무를 담당한 부장판사를 합의부 재판장에 우선 보임할 수 있다.	② 지방법원장, 가정법원장, 행정법원장, 회생법원장 ----------.
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부 재판장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	③ 지방법원장, 가정법원장, 행정법원장, 회생법원장 ----------.
〈신 설〉	제4조의5(고등법원 등의 재판장의 보임) ① 고등법원장 및 특허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의 재판장을 법관인사규칙 제10조제3항의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법조경력, 나이, 고등법원 판사 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.
〈신 설〉	② 고등법원장 및 특허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재판장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-1245